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육제한의 범위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 며,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 육을 할 수 없다.	제3조(사육제한의 범위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4.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 선거리 500m 이내 구역
<u><신 설></u>	15. 「수도법」 제3조에 따른 마을단위 상수원(마을상수도,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) 의 취수시설(집수정을 포함한 다)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
<u><신 설></u>	16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 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 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, 「체 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,000㎡ 이상 노

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유자 시설, 수련시설 및 숙박 시설,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연구소 및 도서관,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, 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1 km 이내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축사건축허가 가능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5년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변동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.</u>
--	---